공고 제 32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04월 20일

가정1동장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 *욱	정 *욱 1981-02-17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80번길 (가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4-09